

제 376 호

1973.6.13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석

편집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444·6090

# 시보

차 례

◎ 규 칙

제 1305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3
제 1306 호	서울특별시상수도시공운영규칙중개정규칙	10
제 1307 호	서울특별시단체감독규칙중개정규칙	12
제 1308 호	서울특별시의무촉탁규정중개정규칙	12

◎ 교 시

제 8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및지적변경승인	13
제 89 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지정번호 종류년 분류부여	14

◎ 사 령

.....	15
-------	----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1687

**규 칙**

서울특별시 급수조배 시행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시장 양택식  
1973년 6월 12일

◎ 서울특별시 규칙제 1305 호

서울특별시 급수조배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급수조배 시행규칙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2 항중 "30 세대 이상의" 문  
삭제한다.

제 3 조의 2 문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 3 조의 2 (공용급수전의제전) 시장은  
조배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된 공용급수전에 대하여 설치 당시  
의 이용자의 상당수가 전용급수전을  
설치하였거나 다른 공용급수전의 이  
용이 가능함으로서 그 이용자가 전  
조 제 1 항 제 1 호의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전용급수전을 설치  
할 수 없거나 다른 공용급수전을

이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영세업  
이 2 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 내지 제 10 조 "시장"을 "관  
할수도 사업소장"으로 하고 제 8 조  
제 3 항중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다음에 "시장의 승인  
을 얻어"를 삽입한다.

제 13 조 제 4 항중 "한지제 (약 7㎡)  
당 5원"을 "한지제 (50㎡) 당 3원"  
으로 한다.

제 16 조제 2 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② 조배 제 30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높은 오물의업수 적용은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목욕탕 (각층)
2. 영업용 제 1 층
3. 공업용
4. 영업용 제 2 층
5. 목욕탕 (울층)
6. 개 사 용
7. 특 수 용
8. 공설 공용

<p>제 19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3 항중 「서식지 7 호」를 「서식제 5 호」로 한다.</p> <p>① 급수사용자등이 사용료를 납입하였을 때에는 시금고는 별지 제 3 호 서식상 시금고 납부서에 영수인을 달인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수도사업소장은 별지 제 4 호 서식의 동화제삼서한 교부한다. 다만 수도사업소장이 거절하는 경우원이 급수사용자등발 방문</p>	<p>하고 수납하는 때에는 별지 제 3 호 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한다.</p> <p>별표 제 1 호와 제 3 호서식 및 제 4 호서식을 별지와같이하고 제 5 호서식과 제 6 호 서식을 각각 삭제하며 제 7 호 서식을 제 5 호 서식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지</p> <p>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p>
--	--

별표 제 1 호

급 수 종 별 구 분 표

- 가사용 : 시민주거용급수, 다만 10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서 단일 양수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조별별표제 2 호의 가사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경우 총량을 사용세대별로 산정한 평균 사용량의 1.1 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2. 영업장 제 1 종 :

호	업            주	적            요
1	극            잔	감류 ,    울류 감류 ,    울류,    별류  한식, 밀식, 중국식, 양식요리, 카바레, 바, 클럽, 피관등  읍설시설이 있는 업체
2	호            달	
3	여            파	
4	은    랭    은    지    직	
5	식    당    음식    강	
6	별            실	
7	요    전    요리    겸	
8	백            화            점	
9	인            세            소	

호	업 종	적 요	
10	다 방 , 빛 과 점	색 락 , 기계 시설을 보유한 업체  이규치 급수종별 구분표 각항에 명시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도가 주택전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건축물 (지하층포함)  1. 위에 제기한업종의 영업용도나 종사원 및 내객용으로 월 60㎡정도 급수가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한 급수  2. 영업용 제 2종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업종이 단일양수기를 경유하여 급수를 사용함에	
11	한 중 막		
12	세 락 소		
13	이 발 관		
14	주유소 및 주차장		
15	꽃 집 및 식 목업		
16	사립학술강습소 또는학원		
17	사립대학부속병원		
18	보 릿 장		
19	예 식 장		
20	세 차 장		
21	빌 딩		
22	기 타		
3. 영업용 제 2종 :			
호	업 종		적 요
1	세 락 소		영업용 1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체의세탁소
2	의 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3	당 구 장		
4	수 견		선술집 및 이와 유사한 소규모 주류판매업
5	인 세 소		영업용 제 1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인 세소
6	간 이 음식 견		라면, 국수, 팥류등 간이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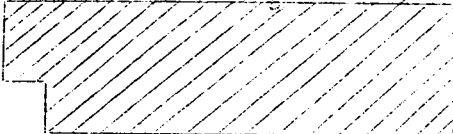
호	업 종	적 요	
7	정 육 점	영업 제 1 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및 공업용 급수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업체 로서 영업용도 또는 종사원용으로 급수를 사 용하는 업체	
8	여 인 숙 및 하 숙 업		
9	미 장 원		
10	사 무 실		
11	실내스케트장및수영장		
12	기 원		
13	철 할 격, 목 재 상 및 관 역 상		
14	기 타		
4. 공업용 : 세조가공업소도, 등록된 업체로서 월평균 200㎡이상 사용하는 다음에 제기하는 업소에 대한 급수			
호	업 종		적 요
1	약 조 업		
2	계 은 업		
3	계 담 업		
4	방직및직물가공업		
5	세 밧 업		
6	기계기계제조공업		

<p>7 8 9 10 11 12 13 14 15</p>	<p>철강용료제조업 유지공업 주철및내철공업 계지공업 제과업 고무제품제조업 섬유공업 제약업 식료품제조가공업</p>	<p>제과, 제빵, 엿류, 빙과, 유제품, 식육어육제품 냉동업, 통조림, 병조림, 인조버터, 조미식품, 두부, 당면, 식용유</p>
<p>5. 목욕탕(감종) : 1) 대중목탕이외에 목탕, 가족탕, 너키탕, 휴게실, 사우나 (휴게실과 겸용하지 않은 것은 제외)의 시설의 일부및전부를 겸비한 영업소에 대한 급수 2) 숙박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목욕 설비로서 숙박업법에 의한 여관및호텔영업을 하는 업체는 제외하되 여관및호텔의 객실내목탕시설을 목욕 또는 가족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는 목욕탕감으로 한다.</p> <p>6. 목욕탕(울송) : 대중탕 시설만 있는 영업소에 대한 급수</p> <p>7. 공설광장 : 조례 제4조제2호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급수전에대한급수</p> <p>8. 복수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당, 사회구조단체, 병영, 학교, 성도관영 대학부속병원및 신문사, 방송국, 한국과학기술단체의 연구기관등에 대한 급수</p> <p>9. 시설소화전 : 당해급수시설에 설치된 양수기를 경유하지않고 따로 시설한 소화전</p> <p>10. 일시급수및공사용급수 : 단기간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가설된 급수시설에 의한 급수 또는 전평 33㎡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한 급수</p>		

수금표		입수증		수도요금
주소.성명		주소.성명		수도요금
1973년도		1973년도		
납기 사용량		납기 사용량		
원		원		
수도번호:종별 급수사용료 손료 합계액 (정리번호)		수도번호:종별 납기대납부액		
원 원 원 원		원 원		
가사금 원 납기후 원		납기후 원		
납기후 원		납기후 원		
송달고	73. . .	잠수일과 1973. . .		위 금액 영수함.
확인	73. . .	정수원		(영수일은 이면에 복사로 나눕니다)
				수도사업소본인수입금출납원 (㉔)
				취급자
				취급자의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㉕)

(전면적속)

(보통)	민원신고	(보통)	1. 가사용 5. 목욕탕갑종	수도요금	
(보통)	센타	(보통)	2. 영업용 1종용 6. 목욕탕양종	시금고납부서	
(보통)		(보통)	3. 영업용 2종용 7. 암실광양용		
(보통)		(보통)	4. 공업용 8. 특수		
주소.성명		주소.성명		1973년도	
				납기 사용량	
				원 원 원	
				수도번호:종별 급수사용료 손료 합계액	
				원 원 원	
				위 금액 영수함.	
				한국상업은행	
				이 영수증은 은행수납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취급자	
				수입	
				일부	
				은행의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의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계량기는 이월제입니다.  
 ※이월계량지침수는 318입니다.  
 ※수도사용량제한은 이렇게합니다.  
 금월지침수 - 전월지침수 = 금월사용량

계량기 점검시에는 반드시 입회하여 주십시오.

(후편)

구분 종목명	1건1개월기준요금		소과 사용료		비고
	가산요금(원)	기본요금(원)	사용량구분(원)	계량기(원)	
가 사용	10	150	11-20 21-30 31-40 41이상	15 20 30 40	
1 중	30	1,350	201-1,000 1,001 이상	70 90	
2 중	30	900	1,001 이상	120	
공립용	200	6,000	1,001 이상	35	
3 중	600	48,000	1,001 이상	100	
4 중	600	12,000	3,001 이상	160	
공립용	100	1,000	1,001 이상	200	
가	100	1,000	1,001 이상	25	
가	100	1,000	1,001 이상	10	

※ 가산요금은 누계한편에 적용하며, 누계한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산요금은 누계한편에 적용하며, 누계한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지서 및 납입필용지서

남부지구주소, 설명

1973년도  
납기 사용량

귀하 월

수도요금 중별 급수 사용료 손로 합계액 (정리번호)  
원 원 원

남부정소 ①관할수도사업소 ②한국상업은행, 지점  
남부지한 납기월 말일  
귀하간이 고지 합니다.  
1973년 월 1일  
수도사업소장

문명일부인

제 376 호

(후편 계속)

원 부 수도요금 매월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소, 설명 1973년도

납기

수도요금 중별 납부액

한국상업은행

1973. . . . .

이 부서인

이 부서인 3년간  
상 보관하시기 바

독려사항

1973.6.13 10-9



제 40 호		영 수 주		책 호	번 호
서울특별시		남 부 의 무 자		가 번 지	
업 종		수 건 번 호		호	
구 분	종 별	년 도	기 본	금 액	가 산 금
이 영 수 증 은 五 년 간 보 관 하 십 시 요	급 사 용 수				
	용 구 조 료				
	양 수 기				
	수 탁 공 사 수 입				
	수 수 료				
	계				
상기 금액을 영수한 서기 197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분임수입원 위급자					

**공 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운영규칙을 개정규칙을 이제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장 양 백 식  
1973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규칙 제 1806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운영규칙을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운영규칙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6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 구역은 종로구, 성북구, 도봉구 일원
2. 2 구역은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일원
3. 3 구역은 서대문구, 마포구 일원
4. 4 구역은 용산구, 영등포구, 관악구 일원

별표 제 1호를 실지와 같이 한다.

서식 제 2호 첨부서류란중 " 3. 납세증명서"란을 삭제한다.

취급자 인장과  
인장이  
필요없다

<p>부 칙</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6 조의 공시시공구역은 관악구수도사업소와 봉구수도사업소가 설치된 날로부터 적용한다.</p> <p>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재적재장 및 시공기술자 1인이상을 보완조건으로 허가된 상수도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조건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별표 제 1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시 공 영 업 허 가 기 준 조</p>	<p>③(동전)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허가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허가의 시공구역은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수도사업소외 해당 시공구역으로 허가된 것으로 보며 허가사항중 변경된 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부칙 1항 단서외 적용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수도사업소에서 허가승계 변경된 사항을 원서만다한다.</p>
--	--

. 법	인	인
기술능력	시공기술자 2인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신청인이 시공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자본금	신규 불입자본금 1,000,000원 이상	은행계치액 300,000원 이상
	기존 불입자본금 500,000원 이상 최근 2년간 영업세납부액 영업권 5,000원 이상	은행계치액 200,000원 이상
공사유시설	사무실 3평이상 전화기 1대이상 컴퓨터 1대이상 오스타 2대이상 (50% 이하)	

서울특별시단체감독규칙중 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3년 6월 12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307 호

서울특별시단체감독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단체감독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매년 전년도 10월 31일  
까지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 편성제출된 예산  
안을 회계년도 개시 30 일전까지 이  
를 검토 승인하여야 한다.

제 8 조 다음에 제 8 조의 2 와 제 8 조  
의 3 을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 8 조의 2 (세입세출의 정의와 회계  
년도) ①회계년도의 일체의 지  
출 세출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일  
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②단체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  
료한다.

제 8 조의 3 (결산보고) 시장은 전년  
도 세입세출의 결산내년 3월 31일  
까지 보고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외무축탁규정중 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3년 6월 12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308 호

서울특별시외무축탁규정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외무축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외무축탁규정”을 “서  
울특별시임시직의사규정”으로 하고  
제 1 조의 제목 “(외무축탁)”을 “(정  
의)”로 하고 동조중 “외무축탁이  
라 함은”을 “임시직의사(이하 “의  
사”라 한다)라 함은”으로 한다.  
제 5 조 내지 제 13 조와 별표중 “외  
무축탁”을 “의사”로 한다.

제 10 조중 단서부 삭제한다.

별표 1 의 2 중 “사” 다음에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시립병원 외에서 근무하는 의사  
에게는 월 5,000 원의 직책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다. 경력중 을경력란에

「보전소」를 추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3년6월1일부터 적용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8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및 지적변경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제 3호(69.1.18)

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지적변경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12조와 제13조 및 건설부 고시제123호(73.4.4)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도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3. 5. 30.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소로 일부변경 및 신설조서

구분	등급	유형	면적	주인	연장	기	점	중	점	비	고
기정	소로	3	101	8	172	천호동 127-1	천호동 34-1				
변경	"	2	101	8	216	천호동 227-5	천호동 34-1			노선	연장
기정	"	2	106	8	153	천호동 258	천호동 151				
변경	"	2	106	8	187	천호동 258	천호동 522			노선	연장
기정	"	3	102	6	310	천호동 854	천호동 69-9				
변경	"	3	7	6	126	천호동 854	천호동 77			노선	축소
기정	"	3	103	6	273	천호동 21-1	천호동 21-3				
변경	"	3	103	6	217	천호동 21-1	천호동 74			노선	축소
기정	"	3	104	6	225	천호동 76	천호동 21-3				
변경	"	3	104	6	181	천호동 76	천호동산 19-2			노선	축소
기정	"	3	106	6	451	천호동 283-2	천호동 249				
변경	"	3	106	6	467	천호동 283-2	천호동 147			노선	축소 및 변경
신설	"	3	1	6	102	천호동 226-13	천호동 226-3				

별첨 도면표시와 같은 도면생략(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에 보관)

① 서울특별시고시제 89 호  
 서울특별시 지방분화재 지정번호종류별분류부여  
 서울특별시 지방분화재 지정번호가 일반적으로 부여되었던 것을 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분류하여 부여되었기  
 서울특별시 지방분화재 보호조례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3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 다 — — — — —

당초지정번호	종류별 (분류) 지정번호	분화재명	지정년월일
서울특별시 지방분화재 제 1호	서울특별시 지방유형 분화재 제 1호	강 증 단 비	69.9.18
" 제 2호	" 제 2호	봉 황 각	"
" 제 3호	" 제 3호	양 관	"
" 제 4호	" 제 4호	낙 성 대	72.5.25
" 제 5호	" 제 5호	경 업 원 구 기	"
" 제 6호	" 제 6호	용 양 봉 저 정	"
" 제 7호	" 제 7호	성 계 묘	"
" 제 8호	" 제 8호	사 육 신 묘	"
" 제 9호	" 제 9호	풍 천 우	"
" 제 10호	" 제 10호	한 우 물	72.8.30
" 제 11호	" 제 11호	지 덕 사 부 묘 소	"
" 제 12호	" 제 12호	청 권 사 부 묘 소	"
" 제 13호	" 제 13호	동 심 가 각	"
" 제 14호	" 제 14호	인 조 별 서 유 기 비	"
" 제 16호	" 제 15호	선 농 단	73.1.26
" 제 15호	서울특별시 지방민속자료 제 1호	관 성 묘	72.8.30
" 제 19호	" 제 2호	서 빙 고 부 군 당	73.1.26
" 제 20호	" 제 3호	평 창 동 보 현 산 신 각	"
" 제 21호	" 제 4호	선 바 위	"
" 제 17호	서울특별시 지방기념물 제 1호	잠 실 리 봉 나무	"
" 제 18호	" 제 2호	파 양 동 느 티 나무	"
계	21 점		

사. 령

◎ 1973.6.11.

안 전 과 지방토목기사보 신 건 식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지 하 철 건 설 본 부 지방토목기사보 지 도 영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시 대 문 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지 식 광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3 월에 처함.

구 퇴 정 리 1 과 지방토목기원 남 광 대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구 퇴 정 리 1 과 지방토목기원 박 권 호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 월에 처함.

중 구 보 건 소 지방토목기원보 최 세 탁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 월에 처함.

◎ 1973.6.13.

성 동 구 지방행정서기 이 훈 주  
종로구보건소 근무를 겸함.

마포구보건소 지방행정서기보 오 일 귀  
종로구 근무를 명함.

아 동 병 원 지방행정서사보 김 용 주  
성동구 근무를 명함.

양 노 원 지방행정서기보 김 진 모  
상봉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 북 구 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천 주 영  
기획과 근무를 명함.

숙 구 지방행정서사 전 학 성  
새마을사회복지관 근무를 겸함.

숙 구 지방행정서기보 유 은 식  
동대문구 근무를 겸함.

영 동 포 구 지방행정서기보 오 한 태  
종로구 근무를 겸함.

영 동 포 구 지방행정서기보 송 무 환  
마포구보건소 근무를 겸함.

마 포 구 지방행정서기 전 광 태  
신남광수사 견학을 명함.

16-16 제 376 호

시

보

1973.6.13

<p>전남광주시 지방행정서기 김병호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5호봉을 급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p>	<p>마포구 지방자치기원보 장점섭 구회정리 제 2과 파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적기원보 이상현 마포구 근무를 명함.</p>
--	--

서 울 녹 별 시 장